

## [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 ④

# 산별노조 발도 못붙인다!

###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 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②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 ③ 쟁의행위 사전 통보! 찬반투표 엄격하게!
- ④ 산별노조 간부 사업장 활동 금지!

### 민주노조, 산별노조 파괴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악안은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사업장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주요 임원, 간부를 해고하거나 집단해고 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아예 없앨 수도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민주노조와 산별노조를 아예 말살하는 내용이다.

### 산별노조 간부들 사업장 출입 불가! 해고자는 임원, 대의원 불가능!

한정애 의원은 노조법 개악안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재직자만이 지회 임원, 대의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속노조 위원장, 지부장이 지회에 방문하려면 사측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허락이 없으면 사업장 내 출입이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 노조나 지부 간부들이 지회 선전전에도 함께 할 수 없게 만든다. 만약에 지회장이 해고된다면, 지회장은 재직자가 아니라 임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부당해고 판결이 날 때까지 2~3년 이상 걸리는 걸 생각하면, 이미 임기가 끝나버린다. 산별노조의 활동을 애초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자본은 마음만 먹으면 금속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 사업장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임원, 대의원은 일단 해고하면 된다. 금속노조 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해고된 지회 임원, 대의원은 법적으로 자격을 잃게 된다. 한발 더 나가서 노조가 생기면 전부 집단해고부터 하는 비정규직이나 콜택지회 같은 경우는 노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집단해고되면 아무도 임원, 대의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노조가 존립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 총파업 투쟁으로 노조법 개악 반드시 막는다!

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악안이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노조법 개악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산별노조의 근간을 뒤흔들고, 노조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번 개악안은 우리 금속노조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우리 금속노조를 겨냥하고 있다면, 투쟁을 피할 수 없다. 나부터, 우리 지회부터 결의하고 총파업에 나서야 전국 18만의 금속노조 전체의 총파업이 되고, 민주노총 총파업이 성사된다. 나부터 결의해서 반드시 노조법 개악 저지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나가자!